

시론



김성천

- 현) 중앙대학교 법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학)
- 청소년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정상 범리로는 납득하기 힘든 구속영장 기각

2023년 9월 27일 새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일단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증거 자체는 부족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면서,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우선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본안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세 가지 혐의사실 중에 위증교사 부분은 영장전담 판사도 소명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백현동 개발 의혹 부분은 영장전담 판사의 말에 의하면 이 대표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드는 사건이다. 그렇게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반면에 직접증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니 말이 꼬이기 시작한다.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판단기준에서 벗어나는 결론을 애써 도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개된 논리가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읽으면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직접’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사건에 직접 개입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논리 연결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냥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무언가 이유를 대고 있지만 모두 앞뒤가 맞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 경기도 사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협약식에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장 신청을 했고, 돌아와서 보고서도 제출했다. 그런데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이상하지 않을까. 본인이 출장 가는 것도 결재를 해줬고, 돌아와서 제출한 보고서도 결재를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직접 함께 따라가지 않아서 모른다는 말인 듯하다.

김성태 쌍방울 前 회장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건네줬는데 이 前 부지사가 부탁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대북사업은 번창할 수밖에 없고 이를 모두 쌍방울에서 독점하게 해줄

것이니 재벌이 될 거라고 했다 한다. 경기도에서 그 정도 보장을 해주지 않았다면 사업하는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거저 투자를 했겠는가. 나중에 김성태 전 회장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이 대표는 자신의 비서실장이 대신 문상하게 했다. 조문을 간 비서실장은 김 전 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 지사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모든 사실관계를 두고 영장전담 판사는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한다. 대북송금은 직접 관여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한다. 경기도가 북한에 이 前 지사의 방북을 성사시켜 달라고 4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 해당 문서의 결재권자는 이 前 지사이었다. 그 공문을 기안하고 결재를 받아 북한으로 발송한 사람은 모두 실무담당자이었으니 이 대표가 직접 개입한 일은 아니고, 직접 개입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고 싶어도 어떠한 증거를 없애야 할지 몰라서 못 할 것이라는 말인가. 굳이 직접 증거를 찾아서 없애지 않더라도 이를 교사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판사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의아하다. 이미 위증교사도 한 사람이 증거인멸 교사는 못하겠는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당시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는 공무원들의 진술도 있다. 공문의 내용을 모르면서 결재를 할 수도 있다. 진술은 사실과 다르게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측근들이 모두 구속·기소가 되고 법정에서 이 대표가 연루돼 있다는 진술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도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영장전담 판사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시킬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당 안팎에는 이 대표가 결백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극성지지자들이 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는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공천을 받아야만 의원직을 가질 수 있다. 당대표를 선출한 것은 그들이지만, 투표를 한 이후에는 당대표가 칼자루를 쥐게 된다. 모든 선출직이 다 그렇다. 당선될 때까지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정책에 잘 담아내는 훌륭한 일꾼이 될 것처럼 좋은 말만 늘어놓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태도가 돌변해 버린다. 극성지지자들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가 결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공천권이 그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듯 한 행동을 하는 것일 뿐이니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법조인은 무엇인가. 공천을 받아야만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무언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상황이라면 혹시 그로부터 출세를 보장받았는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새로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새로운 체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해서 뇌물

을 받았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사건이 임의로 배정되기 때문에 뇌물을 전달할 시간이 확보되기 어렵다. 게다가 갑자기 뇌물을 가져다준다고 누구나 덤석 받는 것도 아니다. 평소에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때 이 대표와 그 지지자들이 보인 격렬한 반응을 보면 구속이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었다. 옥중 공천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지경이었다.

마지막으로 잘 믿어지지 않는지만 해당 영장전담 판사가 좌파라는 이유가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자유당 정권의 부패를 경험했다.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대규모 저항운동으로 제1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이후 제2공화국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 5·16 쿠데타에 의해서 제3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 때부터 학생 운동권이 주축이 되는 반부패·반독재 투쟁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반정부 집회와 시위에 가담하는 학생들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형벌보다 더 무서운 일은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것이었다.

중앙정보부, 경찰, 보안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운동권 세력을 감시하고 위협분자를 색출하여 불법 수사를 통해서 혐의를 만들어 검찰로 보내고 판사에 의해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 억압기구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였고 강의내용도 술집에서의 대화도 택시 안에서 토론도 말조심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래도 운동권은 부패한 군사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보기관, 검찰 그리고 법원에 운동권 사람들을 심어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기관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운동권 전력을 만들지 않고 좌파 사상을 숨긴 채 공부에 매진하여야 하였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좌파 인물들이 국가기관으로 들어가는 일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좌파가 부패와 독재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방향 설정이 매우 올바른 일이었다고 본다. 반부패·반독재 투쟁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을 외치고 법치주의를 요구하게 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정작 좌파가 정권을 잡고 나서는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지게 된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검찰총장에게 왜 선출된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고 으박지르는 것을 보면 헛갈린다. 좌파로 분류되는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판단기준을 애써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다. 도대체 좌파가 무엇이기에 버젓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답은 좌파의 본질에서 찾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운동권의 주류를 장악한 민족해방파(NL / National Liberation Fraction)는

마르크스 사상에 충실한 민중민주파(PD / People's Democracy Fraction)와 달리 반제국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보기에 반미 자주화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그러한 점에서 북한과 공통점을 보인다. 반미 자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5·18 민주화 운동이다. 당시에 미국이 신군부 세력을 지지함으로써 폭력 진압을 방관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반제·반과쇼·반미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군부독재를 타도하는 일에 성공하였다.

운동권이 부패한 독재정권 타도라는 위업을 달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좌파 운동권이 법치주의나 민주적 정치체제에 친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적대세력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특화되어 있다. 이 이데올로기는 타도의 대상이 사라지면 존재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상대 진영이 더는 '부패한 독재정권'이 아니더라도 타도하여야 할 악마이어야 한다. 악마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잘 못 되더라도 용서가 된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어마 어마한 혐의내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지키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좌파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좌파 판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